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
조양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**2018년04월11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이**	이** 1968-03-05	강원도 속초시 연포길	재등록
이**	신** 1976-10-26	강원도 속초시 연포길	재등록
문**	문** 1975-02-01	강원도 속초시 선사로1길	재등록
김**	김** 1975-10-05	강원도 속초시 온정로	재등록
박**	박** 1983-02-09	강원도 속초시 청대로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김정미 문의전화 : 033-631-1406)

2018년 04월 04일

조양동장 인

